

- 토양검정 여건이 미비한 시·군·구는 도농업기술원과 사전 협의하여 관할 기본 직접지불금 대상자 준수사항 이행점검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치하여야 한다.

## 다. 이행점검 결과 및 계획 보고

### [ 농촌진흥청 ]

- 농촌진흥청장은 등록신청연도 직불제 토양검정 계획을 3.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이행점검 계획은 등록신청 농가, 점검농가(지목별), 2차 및 3년 후 대상농가 현황을 포함하여야 한다.
    - \* 점검 계획 적용기간 : 1.1일 부터 12.31일 까지
    - \* 토양검정 대상은 전년도와 동일한 경영체로 간주 작성하고, 토양 검정 시 변경사항 반영
- 농촌진흥청장은 이행점검 결과의 훗토람 입력을 확인하고 매년 1.31일까지 이행점검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이행점검 결과는 등록신청 농가, 점검농가(지목별), 부적합농가(1차·3차) 및 단계별 부적합 농가 상세정보(경영체 등록정보, 농가명, 지번 등)이 포함 되어야 한다.
  - 결과입력 전송 확인기한
    - \* 시료채취 기간(1.1. ~ 8.31.) 이행점검 결과 입력 확인기한 : 10.10.
    - \* 시료채취 기간(9.1. ~ 12.31.) 이행점검 결과 입력 확인기한 : 1.31.
    - \* 점검 결과 적용기간 : 1.1일 부터 12.31일 까지

### [ 도농업기술원·시군농업기술센터 ]

- 시군농업기술센터는 등록신청연도 직불제 토양검정 세부추진계획을 2.26일까지 도농업기술원을 통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시군농업기술센터는 토양검정 결과를 ‘훗토람’에 10.15일 및 1.20일 입력하고 1.20일까지 이행점검 결과를 도농업기술원을 통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결과입력 전송 기한
    - \* 시료채취 기간(1.1. ~ 8.31.) 이행점검 결과 입력·전송 기한 : 10.10.
    - \* 시료채취 기간(9.1. ~ 12.31.) 이행점검 결과 입력·전송 기한 : 1.20.
    - \* 전산 오류 발생 또는 오류가 확인된 경우 즉시 농촌진흥청장에게 통보하여 수정하도록 해야 한다.

## IV

##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	과 장	044-201-1771
		계 장	044-201-1774
		담당자	044-201-1778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직불관리과	과 장	054-429-7800
		계 장	054-429-7804
		담당자	054-429-7805
전국 지자체	시도, 시군구, 읍면동 담당자		
농림수산물교육 문화정보원 (교육이수관리시스템 운영)	디지털농정실 (Agrix)	통합콜센터 시스템 상담 지원	1334(내선5)

\* 협조 : 농촌진흥청, 시군구농업기술센터, 농협중앙회 등

### 1 개요 및 일반사항

**가. 목적** :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이하 ‘법’) 제12조제3호에 따라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한 공익직불제 시행에 따른 기본 직불금을 수령하려는 자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에 따라 농업인 의무교육의 체계적인 이행점검을 추진하기 위함

### 나. 근거 법령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농업농촌 공익직불법”) 제12조, 시행령 제14조, 시행규칙 제6조

- (법률)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을 이수할 것
- (시행령) 매년 기본직접지불금을 수령하려는 자가 받아야 하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농촌의 공익기능과 농업인등의 역할
  2. 공익직접지불제도 운영 및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3.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관련 농업인등의 준수사항
  4. 그 밖의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시행에 관한 사항
- (시행규칙)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을 2시간 실시한다.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7조, 제18조, 제19조

-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의무 이행여부 확인을 위하여 조사·수거
-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 제18조제1항의 의무 미이행자 기본직접지불금의 감액지급 또는 등록제한

## 다. 적용시점

○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 대상 공익증진 관련 교육은 아래 사항을 적용한다.

- 이행점검 적용기간 : '24.10.1. ~ '25.9.30.

\* '25년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전에 '24년도 기본직접지불금 등록대상자 대상으로 사전 교육 가능

## 라. 교육 대상자 및 교육시간

○ 기본직접지불금(소농직불금 또는 면적직불금)을 수령하려는 자는 매년 농업인 의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농식품부 장관이 실시하는 내용·방법으로 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2시간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 마. 교육 내용

- 농업·농촌의 공익기능과 농업인들의 역할
- 공익직접지불제도 운영 및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관련 농업인들의 준수사항
- 그 밖의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시행에 관한 사항

## 바. 교육 관련 유관기관 협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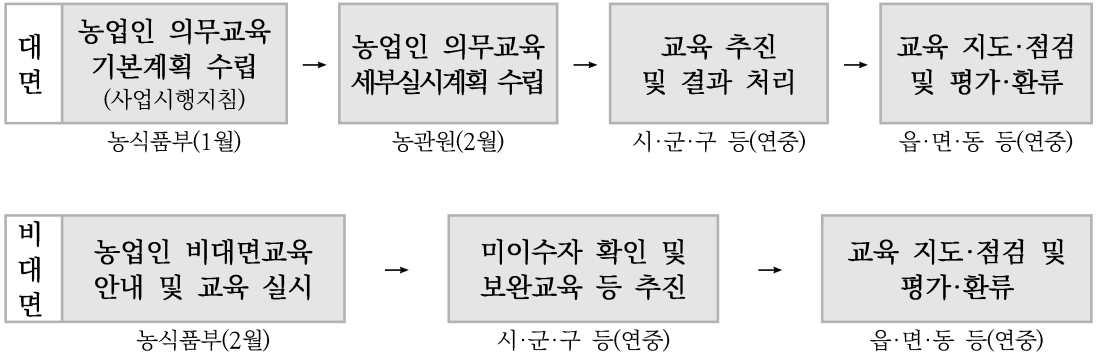
○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관계기관(농촌진흥청, 국립한국농수산대학, 농식품공무원교육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협경제지주 등)은 '25년 교육과정 및 교육자료 등을 활용하여 공익직접지불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사. 교육 이수 결과 등에 대한 처리

○ 교육이수 적용기간 종료 전까지 교육을 이수하도록 독려하고, 종료 이후에는 Agrix시스템의 교육결과를 확인하여 미이수자에게 기본직접지불금 지급을 제한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업무 흐름]	[시기]	[주요 내용]
① 농업인 의무교육 기본계획 수립 등	1~2월 (농식품부)	▶ 농업인 의무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지침 수립 ▶ 온라인 교육(정규, 간소화 과정 등) 운영
② 농업인 의무교육 추진계획 수립	2월 (농관원)	▶ 농업인 의무교육 기본계획 및 사업시행지침 등 반영
②-1 교육과정 검토 및 콘텐츠 제작	연중 (농관원)	▶ 농업·농촌 특성을 고려한 눈높이 교육과정 검토 ▶ 교육과정에 맞는 다양한 콘텐츠 제작·개선
②-2 전문강사 양성 및 관리	연중 (농관원)	▶ 농관원 강사 약 400명 수준으로 양성 및 관리 ▶ 추가 전문 교육강사 양성
②-3 교육이수관리시스템 운영·관리	연중 (농정원, 농관원, 지자체)	▶ 온라인과정이 개설된 농업교육포털과 '기본직불시스템 - 교육이수관리' 연계 운영(농정원) ▶ 교육 대상자 관리 및 교육개설, 이수여부 확인(지자체)  * 기능: 교육대상자 선정·통지, 교육이수자 업로드, 온라인 교육 등
③ 시·군·구별 교육세부 실시계획 수립	연중 (지자체)	▶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교육방식, 교육장소, 일시 등을 포함한 교육 세부 실시계획 수립  * 비대면 교육이 어려운 농업인 중심으로 월별 교육계획 수립추진
③-1 교육대상자 선정 및 일정홍보 등	연중	▶ 읍·면·동별 사전 수요조사 및 미이수자 중심 대상자 선정 ▶ 교육일정 및 교육방식을 홈페이지 및 이통장 회의, 마을 방송, 홍보전단 등으로 안내
③-2 대상자 안내, 전문 강사 섭외 등 교육 준비	연중	▶ 교육개시 전 교육안내서 발송(우편 또는 문자메시지) ▶ 농관원에서 양성·관리하는 전문강사 섭외
③-3 교육 실시 및 결과 처리	연중	▶ 대상자 출결 확인, 이석관리, 교육 진행 ▶ 교육 이수자는 '기본 직불시스템-교육이수관리'에 등재(교육 완료 후 7일까지)
③-4 교육 미이수자 체크 및 독려	매월	▶ 9.30까지 교육 이수 완료 * 특히, 9.11일부터 미이수자 대상 집중 이수 안내
③-5 교육결과 최종 확인	완료 시	▶ '기본 직불시스템-교육이수관리'로 농업인 의무교육 이수자 확인 및 마감
④ 교육 평가 및 환류 (24.11~25.10월)	연중 (농식품부, 농관원)	▶ 교육 운영 지도·점검(수시) ▶ 교육 운영, 결과에 대한 분석으로 개선방안 도출 ▶ 의견 수렴 등으로 내년 계획에 반영

### 가. 농업인 의무교육 계획 수립 및 운영



### 나. 농업인 의무교육 단계별 역할

#### [ 농식품부 ]

- (기본계획 수립) 농업인이 적절하게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수립 및 운영하여야 한다.
  - 대면 및 비대면 방식을 포함하여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농업인의 특성\*(연령, 영농경력 등)에 따라 교육방식을 다르게 구성할 수 있다.
    - \* 농업인 특성에 따른 교육과정 세부운영 방식은 별지 1 참고
- (교육이력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공익직불 의무교육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여야 한다.
  - 온라인 교육 이수자 관리, 대면교육 계획수립·결과입력 등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구축·운영(Agrix 기본형 직불 - 교육이수관리)
    - \* 교육 대상자 명부출력, 교육 안내문자 발송, 교육 일정 관리, 교육 이수자 입력, 이수증 출력, 교육 이수결과 확인(통계자료) 등

#### [ 농관원 ]

- (추진계획 수립) 교육 사전준비, 지도·점검, 운영·평가 등을 포함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 \* '25년 추진계획은 농식품부 기본계획 등을 반영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 (교육과정 및 콘텐츠 개발·제작) 대면, 비대면 방식의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각 과정별로 전달 목표를 명확히 하여 농업인이 공감할 수 있는 쉽고, 재미있는 콘텐츠를 제작하여야 한다.
  - 온라인·전화·집합 등 교육과정별 영상, 음원, PPT 등으로 맞춤형 콘텐츠를 제작한다.
- (전문강사 양성 및 관리) 농업·농촌 공익기능, 준수사항 및 실천방법 등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강의역량을 갖춘 전문강사를 양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
  - 전문성과 교수법을 함양하기 위한 양성교육 및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한다.
  - 교육 수요 및 여건변화 등을 감안해 적정 강사수를 검토·관리한다.
- (교육기관 협업) 개발된 표준교육과정과 콘텐츠를 농식품부·농관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계기관 및 단체\*\*는 농업인 등이 참여하는 관련 교육과정에 표준교육과정을 포함하여야 한다.

\* (농식품부) [www.mafra.go.kr/gong](http://www.mafra.go.kr/gong) → 자료실, (농관원) [www.naqs.go.kr](http://www.naqs.go.kr) → 새소식 → 공지/공고

\*\* (교육기관) 지자체, 한국농수산대학, 농식품공무원교육원, 농식품유통교육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등,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 및 농촌진흥기관(도농업기술원, 기술센터)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품목별 기술교육, 직무교육·실용교육 등, (농협) 품목별 작목반교육, 조합원 교육 등

### [ 교육기관(지자체 등) ]

- (세부실시계획 수립)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대상자 선정·통지, 교육일정·장소, 교육결과 처리 등을 포함하여 농업인 의무교육 세부실시계획(별지 2)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교육기관은 농관원에서 개발한 표준교육과정과 콘텐츠를 활용하여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지자체는 미이수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온라인으로 이수가 어려운 농업인 등을 위해 대면 교육을 편성 및 운영한다.
  - 대면교육을 운영할 경우, 지역 농업인들의 접근 편리한 곳으로 교육장소를 선정하여 교육을 진행하도록 한다.

- \* 교육기관은 고령, 거동이 불편한 농업인 등을 위하여 농업인의 접근성이 좋은 마을회관 등에 직접 방문하여 '찾아가는 공익직불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 영상' 및 '농업인 필수안내서'를 활용하여 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마을 공동체 활동으로 인정 가능)
- 특히, '25년 기본직불금 방문 신청(읍면동) 시 교육 시청 장소 설치 및 교재를 활용하여 교육 희망자가 이수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농업인 등이 참여하는 다른 교육과정에 공익직불제 농업인 교육과정(1시간)을 포함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교육계획 등은 'Agrix 기본형 직불 시스템 - 교육이수관리에 입력하고, 교육 결과 및 이수자에 대한 내용을 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 교육기관(농진청, 농협 등)이 Agrix 시스템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사전에 관할 지자체에 협조 요청을 하고, 관할 지자체는 교육기관이 송부한 교육계획(일시, 장소 등)을 Agrix 시스템에 입력
- 강사 출강은 농관원에서 양성·관리하는 전문강사 인력을 요청할 수 있다.
- \* 다만, 농관원 강사 인원 등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지자체별 공익직불 담당 또는 관련자를 강사로 활용할 수 있다.
- (사전접수) 교육기관은 사전에 공익직불 교육(연계교육 포함)과정에 대하여 우편·메시지·온라인(홈페이지 등) 등의 방법을 통해 홍보 및 안내를 진행하고, 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 등에게 신청을 받아야 한다.
- (교육안내) 교육기관은 교육 개시 전(탄력 운영)까지 교육일정 및 내용을 교육 대상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 \* 교육대상자임을 알리는 내용, 교육받을 일시와 장소 등을 포함하여 교육 개시일 전까지 우편 또는 문자로 통지(별지 4)
- (교육실시) 교육장 준비, 교육 참석자 본인 확인, 참석명부 서명(이수증 발급 여부 체크), 교재 배부, 교육 진행(사회), 이석관리 등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완료 후 퇴장 시에 안전사고 예방 조치 및 안내를 하여야 한다.
  - \* 강의자료는 농식품부 공익직불제 홈페이지 자료실에 게시된 파일을 활용
  - \*\* 대면교육을 진행하는 경우 농식품부에서 운영하는 '전화 출석관리 시스템'을 통해 출석 확인과 이수처리 가능(참고 1)

- (결과처리) 교육기관은 교육 종료 후 7일 이내 ‘기본형 직불시스템-교육이수관리’에 교육 결과를 등록하고, 이수자가 원하는 경우 이수증\*을 출력하여 발급한다.
- 교육기관이 기본형 직불시스템이 아닌 자체 시스템을 통하여 교육결과를 관리할 경우, 이수자 정보를 농식품부에 별도로 전달하여야 한다.
  - \* 이수증은 문자메시지(별지 5) 발송으로 갈음할 수 있음
  - \*\* 교육기관(농진청, 농협 등)이 Agrix 시스템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사전에 관할 지자체에 협조 요청을 하고, 관할 지자체는 교육기관이 송부한 교육결과(이수자 등)를 Agrix 시스템에 입력
- (이수독려) 지자체는 매월 초 ‘기본형 직불시스템-교육이수관리’을 통해 교육미이수자를 조회하고, 교육을 이수하도록 독려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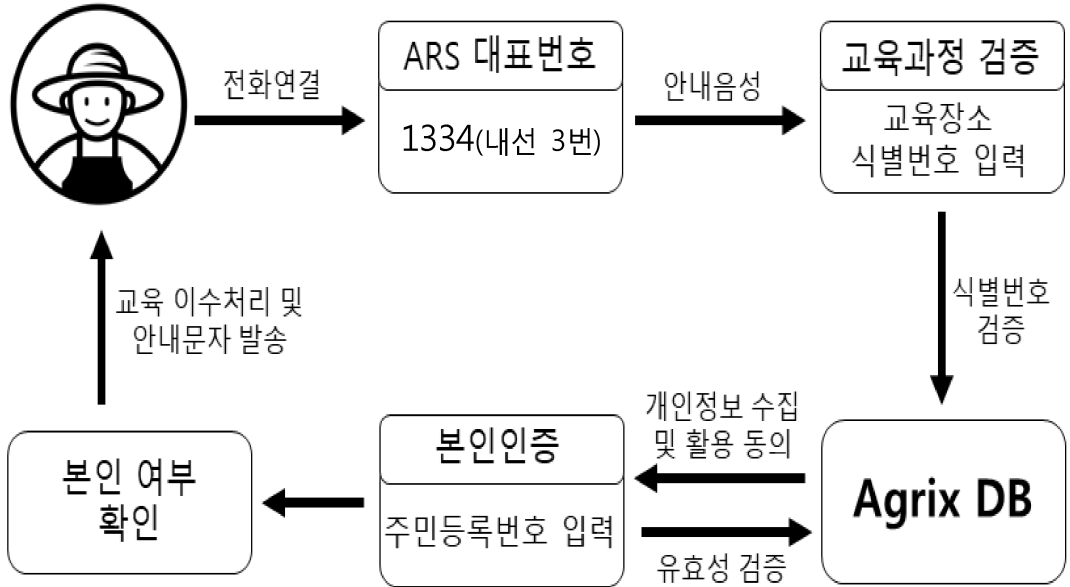
#### 다. 행정사항

- 농식품부 주관으로 비대면 교육(PC, 모바일 등)을 기본적으로 운영하고, 대면 교육은 비대면 교육 활용이 어려운 농업인, 정규교육 의무 이수자 등을 위해 교육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한다.

## 참고 1

## 대면교육 ARS 출석 관리 시스템 운영체제

### □ 대면교육 ARS 출석 관리 시스템 운영체제



### □ 활용방법

- Agrix 시스템 ‘교육이수관리’-‘교육과정관리’에서 대면교육 계획 신규 등록 시 교육장소 식별번호(교육과정 코드 3자리) 생성
  - 계획에 입력된 교육 일자(1일) 동안 교육과정 코드가 이용 가능하며, 교육 일자가 지나면 교육과정 코드가 비활성화됨
    - \* 예를 들어, '25년 2월 10일에 대면교육을 진행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한 경우 2월 10일에만 농업인이 해당 방법으로 교육 이수가 가능
- 대면교육 장소에서 농업인에게 교육 이수방법에 대한 안내를 서면 등으로 진행하고, 농업인이 교육 장소에서 ‘1334번’(내선 3번)으로 전화하여 안내 음성(참고 2)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 완료하면 이수처리
- 반드시 ARS 출석 관리 시스템을 통해 대면 교육 이수처리를 할 필요는 없으며, 기존과 동일하게 서면 및 시스템 개별 입력을 통해서도 이수 처리 가능

## 참고 2

## 공익직불 대면교육 이수처리 방법 안내문(예시)

1. 본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1334'에 전화를 걸어 주세요.
2. 안내음성이 나오면 3번을 눌러주세요.

〈안내음성〉

☎ 귀하께서 참여하신 공익직불 대면교육의 이수확인을 위하여 안내음성에 따라 관련 내용을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다음 안내음성이 나오면 공익직불 교육 식별번호 3자리를 눌러주세요.

〈안내음성〉

☎ 공익직불 교육장소 식별번호 3자리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안내음성에 따라 개인정보 제공 동의 여부 확인(1번)을 눌러 주세요.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 시 교육 이수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내음성〉

☎ 농업농촌공익직불 법령에 따라 준수사항 이행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동의하시면 1번 동의하지 않는 경우 2번을 눌러주세요.

5. 교육 이수자 확인을 위하여 안내음성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 13자리를 입력하여 주세요.

〈안내음성〉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 13자리를 입력하여 주세요.

6. 안내음성에 따라 본인이 맞는 경우 1번 아닌 경우 2번을 눌러주세요.

〈안내음성〉

☎ □□□ 귀하가 맞으시면 1번 아닌 경우 2번을 눌러주세요.

(별지 1)

## 교육 과정별 세부 운영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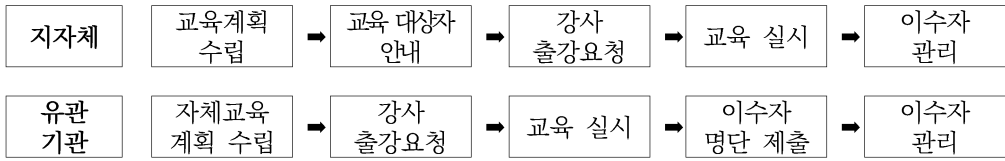
### ■ 교육과정별 세부 내용

※ '25년 교육이수는 '24.10.1~25.9.30일 동안 이수한 교육을 인정하고, 과정별 교육기간은 현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조정 예정

#### ① 정규교육

- 정의: 정규교육은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대면교육\*** 및 농업교육포털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정규과정\*\***을 의미
  - \* 대면교육 외에 영상회의 등을 통한 교육도 인정하며, 지자체 자체 교육뿐만 아니라, 농진청·농협 등의 기존교육과 연계된 공익직불 교육도 인정
  - \* 지자체별 이·통장 교육 후 → 마을별 교육 계획 수립·확정 → 이·통장을 통한 마을 단위 교육도 인정가능하며 이 경우 마을공동체 활동 복수 인정, 다만 증빙자료(이수자 명단, 사진) 필수
  - \*\* 농업교육포털(Agriedu.net)의 '25년도 공익직불제 농업인 의무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인정
- 교육기관: (대면) 지자체, 유관기관 등 / (온라인) 농정원
- 교육대상: 정규과정 의무 이수자\*(필수) + 모든 농업인(자율)
  - \* '25년도 신규 신청자 + '24년도 준수사항 위반자는 반드시 정규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대상자 목록은 추후 시스템 등을 통해 교육기관에 안내 예정
- 교육시기: '24.10.1~'25.9.30.까지 이수한 교육과정에 대해 인정
- 교육방법: 법에서 정한 내용을 포함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되, 농식품부에서 제작 및 배포한 교육자료(PPT, 동영상 등)\*를 활용할 수 있음
  - \* 농식품부 공익직불제 홈페이지(www.mafra.go.kr/gong)-자료실에서 확인 가능
  - \*\* 교육기관은 필요 시, 관할 지역의 농관원에 교육 강사의 출강을 요청할 수 있음
- 기타사항: 대면교육은 모바일 간편교육 및 맞춤형 자동전화(ACS)를 통해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농업인을 중심으로 교육기관 여건에 맞춰 진행

〈대면교육 운영체계(예시)〉



\* 교육기관(시군구, 읍면동 등)은 교육 기관별 여건에 맞게 조정 운영

② 모바일 간편교육

- 정의: 농업인이 간편하게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개별 휴대전화로 URL을 송부하여 모바일 교육 추진하는 것을 의미
- 교육기관: 농식품부
- 교육대상: 정규교육 이수 대상자를 제외한 70세 미만 농업인(56년을 포함하여 이후 출생자)
- 교육시기: '24.10.1~'25.9.30.까지 개별 농업인 안내
- 교육방법: 농업인 교육 URL 송부(문자 메시지) ➔ 농업인 URL 클릭 ➔ 자동교육화면 송출 ➔ 영상 시청 완료 ➔ 자동 이수 처리('기본형 공익 직불제-교육이수관리')

\* 다만, 교육서버 과부하 방지를 위해 지역별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안내 문자 송부

\*\* 농업인 교육 완료 시, '기본형 직불시스템-교육이수관리'에 자동으로 이수자 처리

③ 맞춤형 자동전화

- 정의: 온라인 교육 이용이 어려운 고령의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유선전화를 통한 교육을 진행하는 것을 의미
- 교육기관: 농관원
- 교육대상: 70세 이상 농업인(정규과정 의무 이수자 제외, '55년을 포함하여 이전 출생자)
- 교육시기: '24.10.1~'25.9.30.까지 개별 농업인 안내
- 교육방법: 맞춤형 자동전화 발신 ➔ 농업인 전화 수신 ➔ 통화 완료 ➔ 이수 처리('기본형 공익직불제-교육이수관리')

(별지 2)

## 공익직불제 의무교육 대면교육 추진계획(예시)

### ■ 교육목적

- 공익직불제 시행에 따라 기본직불금을 수령하려는 자가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추진

### ■ 교육개요

- 교육대상: 기본직불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
- 교육내용: 공익직불법에서 정한 내용을 포함하는 교육자료 활용  
\* 농식품부 공익직불제 홈페이지(www.mafra.go.kr/gong)-자료실에서 확인 가능
- 교육일정: 읍·면·동별로 미이수자에 대한 대면교육 계획을 수립하되, 1회 인원은 현장 여건에 따라 조정

교육대상	교육일시	교육장소	교육인원	교육강사
○○리(○○마을)				
△△리(△△마을)				
□□리(□□마을)				

\* 교육계획은 ‘기본형 직불시스템-교육이수관리-교육과정관리’에 입력

### ■ 교육일정 안내(교육 개시일 까지 실시)

- 교육대상자에게 안내서 또는 문자발송(별지 4)
- 시·군·구 및 읍·면·동 홈페이지 및 게시대 등에 교육일정 공고

### ■ 교육결과 처리 및 미이수자 교육 독려(읍·면·동)

- 교육 종료 7일 이내에 ‘기본형 직불시스템-교육이수관리’에 이수자 입력
- 참석명부 서명 시 본인이 희망한 경우 이수증(별지 5) 발급  
\* 이수증은 문자메시지(별지 5) 발송으로 갈음할 수 있음
- 교육 미이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일 교육 이수 안내·독려

### ■ 교육결과 보고(매년 9월 30일까지)

- ‘기본형 직불시스템-교육이수관리’에 다음 내용 입력으로 보고 갈음
  -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교육 결과등록, 이수자 처리, 애로사항 및 개선 방안, 우수사례, 교육운영 중 특이사항 등

(별지 3)

## 공익직불제 농업인 의무교육 안내서(안)

### ■ 우편 발급 양식

공익직불제 농업인 의무교육 안내서	
1. 성명 : _____	2. 생년월일 : _____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매년 기본직접지불금을 수령하려는 자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일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교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정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소농직접지불금 또는 면적직접지불금 수령하려는 자)
교육일시	2025. 0. 0. 00:00
교육장소	○○시·군·구 ○○읍·면·동 ○○교육장
준비물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1.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직불금이 감액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교육일정은 지자체(시군구, 읍면동) 홈페이지, 게시판에도 공고되어 있습니다. 3. 자세한 내용은 시·군·구 또는 읍·면·동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월      일	
<b>읍·면·동장 또는 교육기관명</b>	

### ■ 시스템을 통한 교육안내 문자메시지 발송 양식

<p>○○○는 2025년 00월 00일 00:00부터 0에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을            실시하오니 참석하셔서 교육을 받으시길 바랍니다.</p> <p>문의처: 읍면동 또는 교육기관, 연락처(000-0000-0000)</p> <p>(교육 미이수 시에는 직불금 수령액의 10%가 감액 조치됩니다.)</p>
---

(별지 4)

## 교육 이수증 양식(안)

### ■ 현장 및 시스템 발급 양식

발급번호: 시도-시군구-읍면동-날짜-일련번호(예시: 경상북도-상주시-낙동면-20210501-0001)  
《 교부용 》

### 공익직불제 농업인 의무교육 이수증

성 명: 000

생년월일: 0000년 00월 00일

주 소: 00시·도 00시·군·구 00읍·면·동

교육과정: 2025년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교육일시: 2025. . . .

교육장소:

위 사람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호에 따라 공익직접지불제 농업인 의무교육 과정을 이수하였음  
2025년 00월 00일

교육기관명

직인

### ■ 시스템을 통한 문자메시지 발송 양식

000는 2025년 00월 00일 00000에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교육기관명(직인생략)

(이수증 발급번호: 시도-시군구-읍면동-날짜-일련번호)